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59

제출일자 : 2005. 9. .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보훈회관의 위치 및 용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기타 보훈회관의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

남양주시조례 제 호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남양주시 금곡동 615-10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기타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운영) ①보훈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시설물의 운영) ①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의하여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보훈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남양주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이용) ①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기타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

□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국가등의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보훈회관 설치배경

○ 1998.1.16 : 그린벨트 내 보훈복지회관 건립협조 문서접수 : 상이군경회 남양주시지회

○ 2000.4.7 : 현안(건의)사항 보고(경기도지사)

○ 2000.11. : 보훈회관건립 추진 대책보고

○ 2000.11.22 :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2001.1.- 2003.11. : 부지확보 및 설계완료

○ 2003.11.28 : 공사착공

○ 2005.5. : 준공

□ 보훈회관 건립목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남양주시 보훈의 상징적인 시설로 부각

□ 보훈회관 건립 개요

○ 위　　치 : 금곡동 615-10번지 외 9필지
○ 규　　모 : 1동 1,544㎡(지하1층,지상3층)
○ 사업기간 : 2001. 1 - 2005.5월
○ 사 업 비 : 3,332백만원(국비500백만원,시비2,832백만원)
○ 시 공 자 : 우광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황강영)
○ 층별용도 :
- 지하1층 : 기계실, 한증막
- 지상1층 : 사무실, 휴게실
- 지상2층 : 소사무실(단체사무실), 상담실
- 지상3층 : 회의실(강당), 사무실

○ 주요용도 및 업무:
- 보훈단체사무실 및 임대사무실
-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사업
-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 회원,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보훈단체회원의 통일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요내용

○ 보훈회관 설치의 목적
○ 보훈회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
○ 보훈회관의 시설, 용도에 관한 사항
○ 보훈회관의 시설, 용도, 업무에 관한 사항
○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훈회관 운영계획

1. 회관 운영계획

○ 회관 이용(사용)시간

구 분	기 간	업무시간	비 고
동·하절기	1월 - 12월	09:00 - 18:00	특별한 경우 제외

○ 회관 위탁운영계획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단체에 민간위탁 추진

2. 위탁단체선정

○ 대　　상 :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단체선정 : 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아 남양주시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위원의 평가로 최고득점 단체에 위탁
○ 위탁기간: 3년

3. 1층 사무실 및 매점 임대계획

○ 현 황
. 사무실(임대): 90㎡
. 휴게실 및 매점: 27㎡
○ 임대계획
. 사무실 및 매점에 대하여는 회관 소유권 등기 완료 후 임대계약 및 매점 운영권자 선정

□ 보훈회관 예산 지원계획

○ 인건비
. 1,800,000원 x 3인 x 6월 = 32,400천원
○ 시설운영비(공공요금, 용역료, 보험료 등)
. 4,000,000원 x 6월 = 24,000천원
○ 예산과목: 민간위탁금(2005년도 제1회추경확보)

□ 향후추진계획

○ 조례(안)입법예고:2005.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005.7월
○ 조례(안)시의회 상정:2005.7월
○ 조례공포: 2005.7월